

	기숙사비심의위원회운영규정	규정번호	3-8-46
		제정일자	2026.09.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예지관(학생생활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간사는 예지관 직원 중에 관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교직원 및 학생위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된다.

⑤ 위촉위원의 해촉,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기숙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법(현금, 카드납부,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기숙사비 관련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숙사비 및 납부 방법) ① 입사자는 매 학기 개시 전 별도 공고되는 사항에 따라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시입사일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와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② 기숙사비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의 첫 학기 입사 시에는 분할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가 분할 납부 1회차 납부 후 2회차 기숙사비를 지정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관장은 납부 독촉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7일 이내에도 미납할 시에는 예지관(학생생활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⑤ 분할 납부 신청 후 기숙사비를 미납하여 제4항에 따라 강제퇴사 처리될 시 예지관 입사 후 경과기간 분에 해당하는 기납부금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강제퇴사 처리된 자는 예지관 입사자격을 강제퇴사 후 다음 2개 학기(1년) 제한한다.

⑦ 강제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은 입사자 본인이 부담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환불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